

부 령

● **행정안전부령 제19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안전부령 제7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 2조 중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2년간”을 “2013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3월 15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고용노동부령 제21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